

● 제319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: 766)

2023. 6. 2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[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]

의안번호 766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영옥 의원 외 2명 (찬성 45명)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2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·고령화 추세로 향후 헌혈인구 감소 및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0~20대에 편중된 헌혈자 구조를 개선하여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를 통해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.
- 현행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내 헌혈을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사회적 분위기,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재직 공무원의 헌혈 공가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임.
- 이에 현행 조례에 헌혈 공가 제도를 명시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헌혈 공가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함.
- 또한, 상위법인 「혈액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조문 번호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헌혈 시공가 활용 장려를 규정함. (안 제4조의2 신설)
- 나.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함. (안 제4조의2 신설)
- 다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(안 제1조 등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혈액관리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(별첨)
- 다. 입법예고 : 2023. 6. 8. ~ 2023. 6. 12.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가파른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향후 상당한 혈액 수급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.

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

가.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헌혈 우선 참여 권장 관련(안 제4조의2)

1) 개정안의 내용

- 본 개정안은 『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제4조의2(공공기관 우선참여) 조문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관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것임. 그리고 이를 위해 헌혈 공가 활용 장려 등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(안)
<신 설>	제4조의2(공공기관 우선 참여)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신 설>	1. 소속 공무원 헌혈 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
<신 설>	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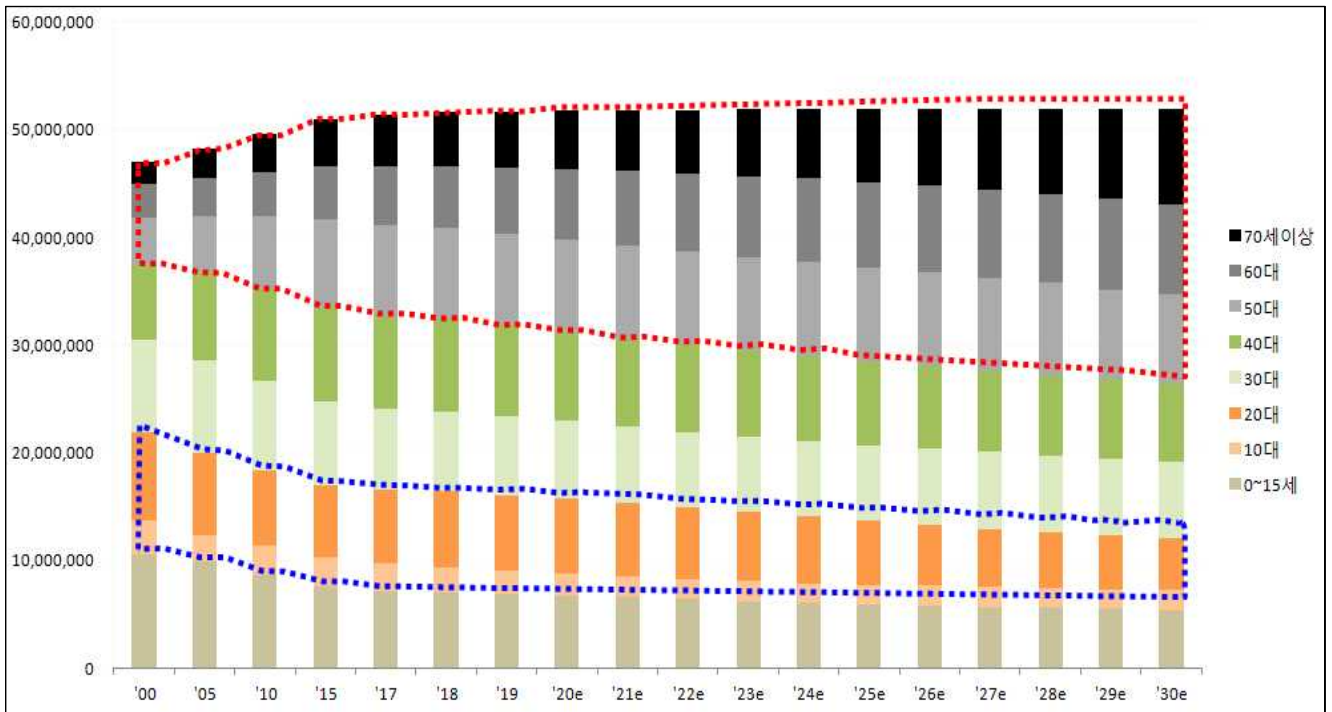
2) 검토의견

-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주된 헌혈 연령층인 10대~20대 인구(22년 기준 전체 헌혈 대비 54%(표1))가 줄어 혈액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반해 헌혈의 주된 수요 연령층인 50대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**혈액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**이 예상됨.

[표1]: 2022년 연령별 헌혈 현황1)

	16~19세	20~29세	30~39세	40~49세	50~59세	60세 이상	계
건수	462,186	970,120	439,078	463,883	262,920	50,820	2,649,007
비율	17%	37%	17%	18%	10%	2%	100%

[표2]: 대한민국 중장기 연령대별 인구 변화2)>



- 이에 혈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. 왜냐하면 **혈액 공급 측면**에서 ① 혈액을 대신할 대체물질 또는 인공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②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③ 『혈액관리법』 제3조3)에 따라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.

1) 출처: 2022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

2) 출처: 국회 입법조사처 혈액수급 현황 및 헌혈 증진 방안

3) 『혈액관리법』 제3조(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금전,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(給付)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(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)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이하 ②항~④항 생략)

따라서, 현재로서는 사회 각 계층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가능하게 할 거의 유일한 수단임.

- 이와 더불어 **혈액 수요 측면**에서 보면 혈액은 여러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필수적 성분으로써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임. 특히 **중증 외상 수술 등의 응급 수술을 받는 환자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 유지가 필수적임에 따라 수혈이 수술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.**
- 그런데, 현재 혈액 수급량은 **앞서 언급한 ‘수술 관련 헌혈 수요’마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**에 있음. 특히 혈액암 환자 또는 백혈병 환자 등에게 필요한 ‘**혈소판 성분헌혈4)**’ 등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. 이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‘**지정헌혈5)**’등으로 **직접 헌혈자와 혈액을 구해와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.**

[표3]: 2017년~2021년 지정헌혈 현황6)

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지정헌혈 (건수)	20,726 건	19,953 건	45,429 건	77,151 건	142,355 건

[표4]: 혈액부족으로 인한 지정헌혈 관련 기사

연번	기사 제목	언론사	날짜
1	"살고 싶으면 피 구해오라니 참 잔인하다"...'지정헌혈' 암환자 피눈물	머니투데이	23.5.10
2	[헬스컷] '혈소판 한 팩 200만원'... 피를 사고 판다고?	헬스조선	22.8.23
3	"피 직접 구해 오래요" 만삭 임신부는 피가 말랐다	한국일보	22.5.19

4) **헌혈의 종류**는 크게 1)전혈과 2)성분헌혈 두가지로 나뉨. 1)**전혈**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헌혈방식으로 혈액의 모든 성분(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혈장) 전체를 채혈하는 방식임. 보통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혈은 원심분리 등을 통해 농축적혈구, 농축혈소판 등 여러 혈액 제제로 분리 제조되어 각 용도별로 환자에게 사용됨. 이에 반해 2)**성분헌혈**은 헌혈 당시부터 ‘필요한 성분 자체’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방식임. 예를 들어 ‘성분채혈 혈소판’의 경우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임. **쉽게 말해, 전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전체 패키지로 헌혈하는 것이고 성분헌혈은 특정 성분만을 맞춤형으로 헌혈하는 것임.** (출처: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설명 내용 재가공)

5) [지정헌혈]: 의료기관 및 환자가 지정 의뢰한 헌혈지원자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헌혈 후 그 혈액이 지정된 수혈자에게 수혈되는 헌혈, **쉽게 말해 헌혈하는 사람과 헌혈 받는 사람이 매칭·지정되어 있는 헌혈** (출처: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)

6) 출처: 2021년도 제5차 혈액관리위원회 및 ‘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,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?’, 국회토론회 (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 정책세미나 자료)

- 따라서, 사회 전반적인 혈액부족 현상을 타개하고자 서울시 산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우선적으로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헌혈 공가 활용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 및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본 조례(안)은 그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됨.

나.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‘상위법령 조문순서 개정사항’ 반영관련 (안 제1조, 제2조제2호, 제8조제1항)

1) 개정안의 내용

- 본 개정안은 『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『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』의 법령 조문 순서 개정 사항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,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4조 및 제4조의6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정의) (생 략) 1. (생 략) 2. "헌혈권장활동"이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 3.~4.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제4조의3제1항</u> ----- <u>제2조의3제2항</u> ----- ----- 3.~4. (현행과 같음)
제8조(헌혈추진협의회 구성) ①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	제8조(-----) ① ----- <u>제4조의6</u> ----- -----

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
지역사회의 시민·단체 또는 공공기
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
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
성할 수 있다.

②~⑤ (생략)

-----.

②~⑤ (현행과 같음)

2)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『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』의 ‘법령
조문순서 개정사항’을 현행화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
령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
판단됨.

※ 집행기관 의견 : 원안가결

- 본 조례 개정안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헌혈 공가
활용 장려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헌혈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
안을 마련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한 것으
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

3 종합의견

○ [공공기관 헌혈 우선 참여 권장 관련] (안 제4조의2)

- 저출산 · 고령화로 인해 주된 헌혈층인 10대~20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, 향후 심각한 혈액 수급 불균형이 예상됨. 따라서, 10대~20대 외 타 연령대의 헌혈 수급이 필요한 상황임.
- 현재 '수술 관련 헌혈 수요'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정도로 혈액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, 이에 따라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'지정헌혈' 등으로 직접 혈액과 헌혈자를 찾아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.
- 따라서, 이러한 심각한 혈액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부터 우선적으로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본 조례안은 그 시의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

○ [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]

(안 제1조, 제2조제2호, 제8조제1항)

- 본 개정안은 현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『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』 등 상위법령의 '조문순서 개정사항'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써 정확한 법령 인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문 의 처

신현태 입법조사관 (02-2180-8145)